

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약약서

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와 관련하여 에별손해보험(주)와 본인 ()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신청 및 약약합니다.

- 다 음 -

1. 본인 ()는 20 년 월 발생한 (진단명:)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신청하며 (상품명:)보험 (증권번호 :)에서 선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, 향후 최종 산정보험금이 선지급한 보험금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 그 차액(선지급 보험금 금액 - 최종보험금)을 에별손해보험로 환급할 것을 약약합니다.
2. 상기인은 위 1항의 내용에 착오 또는 본 건 사고의 관계자로부터 사기와 강박 등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작성한 것으로 불이행시 이로 인한 귀사의 소송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민,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피보험자와의 관계 :

성 명 : (인)

주 민 번 호 : -

주 소 :

담당자 :

TEL :

FAX :

-----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안내 -----

실손의료보험(실손의료비) 가입자 중 입원 치료 후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선납입하기 곤란한 **일정 대상자**에 한해 중간정산액 중 일부(예상 지급보험금의 70%)를 선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.

대상자의 범위

① 의료급여법상 1종·2종 수급권자

②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'에서 정한 중증질환자

③ 의료비 중간정산액(본인부담기준)이 300만원 이상인 **고액의료비**를 부담하는 자

- ② 또는 ③의 경우,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**종합병원**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**종합전문요양기관**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**상급종합병원**으로 제한

※ 단, 위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**손해조사 또는 사고조사**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제출서류 :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약약서, 중간정산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 등